

##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(해당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)

제3조제1항 중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1년으로 하되,”를 “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<u>금융규제 운영규정</u>」 제13조에 따른 <u>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</u>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9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</p>	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금융규제 운영규정</u>」 제13조에 따른 <u>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(해당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)</u>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<u>11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/p>

<p>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<u>3명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<u>1년</u>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<u>1년</u>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5명</u>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</p> <p>---- <u>2년</u>으로 하되, <u>1회</u>에 한하  <u>연</u> ---. -----</p> <p>----- <u>2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
--	---